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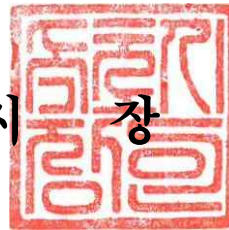
속초시 공고 제2024-264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속초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규칙안 입법예고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속초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20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속초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규칙안
2. 제정사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문화재 명칭 변경 및 분류 체계가 재정립되면서 상위법령과 불일치·기능 상실한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국가유산법 체제전환에 따른 용어 치환
※ 문화재 / 문화유산 / 자연유산 → 국가유산

※ 무형문화재 → 무형유산

※ 매장문화재 → 매장유산

※ 국가지정문화재 → 국가지정유산

4. 자치법규안: 붙임 참조

5. 의견 제출

가.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안내

- 1) 제출기간: 2024. 3. 21. ~ 2024. 4. 9.(20일간)
- 2)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033-639-2345)
- 3) 주 소: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속초시청 문화체육과)

※ 제출 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문화체육과(문화유산팀, ☎ 033-639-22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규칙 제 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속초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규칙안

제1조(「속초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의 개정) 속초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속초시립품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속초시립품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 속초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현행		개정안	
[별표] 속초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 속초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부서	단위업무	부서	단위업무
문화체육과	1. ~ 2. (현행과 같음)	문화체육과	1. ~ 2. (현행과 같음)
문화체육과	3. 문화재 보존관리	문화체육과	3. 국가유산 보존관리
문화체육과	가. 문화재지정 신청	문화체육과	가. 국가유산 지정·등록, 신청·해제
문화체육과	나. 문화재 보수계획 수립	문화체육과	나. 국가유산 보수계획 수립
문화체육과	다. 문화재 명예관리인 관리	문화체육과	다. 국가유산 명예관리인 관리
문화체육과	라. 문화재사범 단속	문화체육과	라. 국가유산 사범 단속
문화체육과	마. 국가지정문화재현상 변경허가신청	문화체육과	마. 국가지정유산 현상 변경허가신청
문화체육과	바. 발견 매장문화재의 신고	문화체육과	바. 발견 매장유산의 신고
문화체육과	사. 천연기념물 표본, 박제신고 접수	문화체육과	사. 천연기념물 표본, 박제신고 접수
문화체육과	4. ~ 26. (현행과 같음)	문화체육과	4. ~ 26. (현행과 같음)

제2조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별표 2] 합산대상 경력의 환산기준표			[별표 2] 합산대상 경력의 환산기준표		
경력구분	경력내용	적용비율	경력구분	경력내용	적용비율
유사경력	· 동일분야의 무형문화재 전수조교 이상	50%	유사경력	· 동일분야의 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이상	50%
	· 동일분야의 무형문화재 이수자	50%		· 동일분야의 무형유산 이수자	50%

제2조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표 2]

합산대상 경력의 환산기준표

경력구분	경 력 내 용	적용비율
단원경력	•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한 경력	100%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중등학교이상 동일분야에 전임강사 이상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	100%
	• 군복무 경력(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에 준함)	100%
유사경력	• 국제기관 또는 단체에서 동일분야에 상근한 경력	100% (비상근일 경우 50%)
	•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동일분야에 활동한 경력	80%
	• 해외에서 동일분야에 연구 연구 또는 연기를 한 경우	80%
	• 동일분야의 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이상	50%
	• 동일분야의 무형유산 이수자	50%